

2006 육상동물위생규약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2006)

1. 가축식별 및 이력추적과 축산물의 원산지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2. 가축의 이력추적과 축산물원산지의 이력추적은 세계수역사무국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관련 기준을 고려할 때, 푸드체인을 통해 이력추적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가축식별과 이력추적은 가축위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動物原性感染症 포함)과 식품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들은 질병발생과 식품안전사고의 관리, 예방접종 프로그램, 축산업, 구획화(zoning), 감시, 초기대응 및 통보체계, 가축이동통제, 점검, 인증, 수의약품의 교역과 이용에 대한 엄정한 처리, 농장 수준에서 사료와 약품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특정국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한 가축식별과 이력추적의 목적과 결과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위험의 평가와 아래에 열거된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한 목적과 결과는 이행 驟醫기관과 관련분야의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정의되고,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
5. 가축식별과 이력추적을 위해 선정된 시스템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위험평가의 결과, 가축과 공중위생 상황, 품종·마리 수·분포 같은 가축의 전체수를 결정하는 요인들, 생산형태, 가축 이동패턴, 이용 가능한 기술, 가축과 축산물의 교역, 비용편익분석과 기타 경제적인 고려, 문화적 양상들이 가축식별 및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어떤 시스템이 사용되더라도 앞서 정의된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된 세계수역사무국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6. 가축식별과 이력추적은 수의기관의 책임 하에 있어야 한다.
7. 관련 정부기관과 더불어, 민간부문과 협의를 통해 수의기관은 해당 국가에서 개체식별과 이력추적 실행을 위한 법적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국가간의 호환성과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간련 국제 기준과 의무조항들이 체계를 갖출 때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법적체계는 목적, 범위, 관련 당사자들의 의무, 기밀사항, 접근성 문제, 정보의 효율적인 교환 등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8. 선정된 가축식별 시스템과 이력추적제도의 특정 목적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련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으며, 법적체계, 절차, 유능한 기관, 시설물이나 그 소유자들의 신원, 가축식별과 이동 등과 같은 것들이 실행 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9. 동일한 시스템(의도기준)보다도 동일한 결과(이행기준)들이 가축식별 시스템과 이력추적을 비교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